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사업주 처벌 등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32호)

2026. 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위험성평가 실시의무 위반 사업주 처벌 등	2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17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작업과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이와 같은 위험성평가가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위험성평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175조).

Ⅲ. 검토의견

1. 위험성평가 실시의무 위반 사업주 처벌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고,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조치사항 기록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안제24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② (생략)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하여야~~ <u>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u> -----. ④ (현행과 같음)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9조제1항·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제3항, 제108	제171조(벌칙) ----- ----- ----- 1. 제36조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

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을 위반한 자 2. ~ 4. (생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16. (생략) ⑥·⑦ (생략)	----- ----- ----- ----- 2. ~ 4.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u>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u> 4. ~ 16.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사업주로부터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작업장에 잠재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유해·위험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를 파악하도록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여 위험작업에 노출되고 위험통제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해야 하는 ‘자주관리원칙’을 구현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법에는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가 도입 취지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하는 자גיע방규율’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과 자גיע방규율적 측면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위험성평가 실시와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 및 근로자대표 요구 시 근로자대표 참여 및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의 근로자 고지 의무, 위험성 평가 결과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의무 위반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 참여 및 고지 의무 위반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록·보존 의무 위반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26년 2월 19일 개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단,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업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개정안의 취지가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의무 신설하는 개정안은 사업장의 형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최소화하여 제출하는 등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 발생 우려가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이나 위험성평가를 수시로 실시하는 사업장은 제출할 자료 준비에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 의무위반에 벌칙을 부과하는 개정안은 위험성평가 이행력 제고라는 제재 도입 목적을 고려한다면 행정청이 곧바로 부과·집행이 가능한 과태료가 형벌보다 실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